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252
----------	------

발의년월일: 2017년 11월 9일

발 의 자: 신원철,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양천), 김경자(강서), 김광수(노원), 김광수(도봉),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찬중, 유 청,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희, 황규복, 황준환 의원 (106명)

1. 주 문

별첨 “결의안”과 같음(결의안 첨부)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 간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음

나. 하지만 현재까지 헌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쪽짜리 규정이었으며, 얼마전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로드맵 또한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미미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에 꼭 필요한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시점임

다.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 송 처 :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가지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지나 간 정권 시절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알맹이 없는 내용을 답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기관대립형(의회-단체장)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로드맵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뿐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꼭 필요한 항목들이지만, 강력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제한적일 경우, 이양되는 권한이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권한 오·남용에 쓰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쪽짜리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에 국회, 제4장에 정부를 명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제8장은 단 두 개 조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상 단체장 중심주의를 명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심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선결과제이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함에 있어 그 동안 간과시 해 왔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금년내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전국최초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본구조는 지방자치법 제5장의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또한 지방의회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꼭 필요한 자치입법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 위상강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금년내 국회통과” 및 “지방의회법 발의 및 제정”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주민자치 대의기관인 지방
의회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지방의회 무시한 행안부
로드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 오랜 숙원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
을 촉구한다

셋째,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2017. 11.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